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년 8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7월 24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8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년 8월 5)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한국 현대단편소설 백미 "메밀꽃 필무렵"의 작가 이효석선생의 문학전승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이효석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소관업무, 기능을 규정(안 제1조내지 제4조)
- 사용허가,사용료징수, 감면 근거마련(안 제5조 내지 제8조)
- 관람료 징수 및 무료관람 근거마련(안 제11조, 제12조)
-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선정·협약체결(안 제13조, 제14조,제15조)
- 운영지원 및 감독근거, 협약의 취소근거(안 제16조내지 제1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안 제20조 내지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와 제15조(조례제정권)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효석 문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첫째, 제1장 총칙을 보면 목적과 용어정의·봉평면 창동리로 하는 위치와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등을 보면

사용허가는 군수에게 받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야외공연장 3만원, 문학교실은 시간대별로 차등하여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 개인의 경우 어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 5백원, 어린이1천원으로 한 것은 전국의 유사 문학관 관람료와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사용료는 납부·반환·사용료감면·무료관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제3장 및 운영 및 위탁관리를 보면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탁자 선정·협약체결의 조건등 내용과 함께 공증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지원·감독·협약의 취소·정지·시정시킬 수 있는 규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4장 운영위원회를 보면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예산범위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범위와 한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준수하는등 입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였으며

법령의 형식·절차·자구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 끝 .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02. 7. 2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한국 현대단편소설의 백미 "메밀꽃 필무렵"의 작가 이효석선생의 문학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이효석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소관업무,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나.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감면 근거마련(안 제5조 내지 제8조)
- 다. 관람료 징수 및 무료관람 근거마련(안 제11조, 제12조)
- 라.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선정 협약체결(안 제13조, 14조, 15조)
- 마. 운영지원 및 감독근거, 협약의 취소근거(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안 제20조 내지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영 계획임.
- 다.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효석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라 함은 본관(전시실, 메밀향토자료관, 문학교실, 생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문학교실, 야외공연장 및 그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전시관 및 메밀향토자료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당해년도 기준 만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당해년도 기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당해년도 기준 만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중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이효석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①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 군수는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사용료는 문학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하면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평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효석문화제 및 효석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관람료) ①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50%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신분증 소지자)

4. 만 6세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이상 노인
5. 국 · 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6.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소지자)
8. 기타 군수가 관람료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운영 및 위탁관리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문학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감독) ①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8조(협약의 취소 등) ①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②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9조(명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이효석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 제2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에는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무)위원회는 문학관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문학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기준	비 고
문학교실	오전	30,000	※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오후	40,000	
	야간	50,000	
야외공연장	1일	30,000	1일(09:00~22:00)
정보검색자료출력	1매	500	
자료복사	1매	100	

[별표2]

○ 문학관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500	1,000	500	